

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1.6.9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,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노O영	93.02.03.	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	부정수급 처분 및 취업지원 종료	○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회차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으로 기지급액(500,000원)반환 및 이후 수급기간 수급권 소멸 ○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5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서울 도봉구 도봉로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1.6.9. ~ 2020.6.23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한영란(Tel. 02-2171-178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